

MINI Market Report

국가	미국
제품	곤드레나물

주관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ONTENTS

I. 미국 시장 정보 1
1. 수입 추이
2. 소비 트렌드 2
T. 미국 통관 정보 ····· 5
1. 관세 현황 5
2. 통관 거부사례 5
3. 수입 통관 절차 7
Ⅲ. 미국 검역 정보 13
IV. 미국 라벨링 정보 ······ 18
※ 참고자료

** Comment **

1. 조사 개요

□ 조사 국가 : 미국

□ 조사제품 : 곤드레나물

□ 조사 항목

■ 시장동향: 소비동향

■ 통관정보: 관세현황, 통관거부사례

■ 검역제도 : 검역 절차

■ 라벨링 및 식품 첨가물 : 규정 및 관련 정책

2. 조사 일정

STEP	내용	완료일
조사 신청	- 미니조사 신청서 입수	7월 11일
조사 착수	- 조사국가/제품/항목 확인, 조사 담당자 배정	7월 12일
1차 정보수집	- 미국 시장/통관/검역/라벨링 국내외 정보 수집	7월 24일
중간 보고	- 사우디 시장/가격/통관/검역 중간보고서 작성	7월 25일
2차 정보 수집	- 미국 정보 수집 보강	9월 4일
최종 보고	-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송부	9월 5일

3. 미니조사 결과

곤드레나물과 근접한 정보가 전무한 바, 가장 근접한 카테고리인 건조채소, 채소류를 키워드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미국 시장 정보

1. 수입 추이

- □ 미국의 건조 곤드레나물은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건조채소」으로 분류되며 가 장 근접한 HS CODE는「0712.90.8580」로 파악되었음
- □ 미국의 건조채소 수입추이
 - 미국은 2013년 1억 9,494만 6,787 달러 규모의 건조채소를 수입하였고,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터키, 독일, 멕시코 등이 있음
 -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1억 1,390만 9,599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3.68% 증가한 수치임
 - 중국에 이어 터키에서 1,884만 2,236 달러 규모의 건조채소를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0.90 증가한 수치임
 - 미국은 한국에서, 104만 9,389 달러 규모의 건조채소를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6.11% 감소한 수치임

< 미국의 건조채소 수입 통계 >

	United States Import Statistics					
Co	Commodity: 071290, Vegetables, Nesoi, Dried And Vegetable Mixtures, Dried (Whole, Cut,					
		Sliced, Etc.),	But Not Further	Prepared		
		Calenda	r Year: 2012 - 2	013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2	2013	2012	2013	2013/2012
World 174,921,334 194,946,787		100.00	100.00	11.45		
1	China	100,201,086	113,909,599	57.28	58.43	13.68
2	Turkey	18,674,359	18,842,236	10.68	9.67	0.90

20	South Korea	1,117,676	1,049,389	0.64	0.54	- 6.11
:	i i	:	:	:	:	:
10	United Kingdom	2,249,998	2,444,929	1.29	1.25	8.66
9	India	2,753,005	2,797,713	1.57	1.44	1.62
8	Netherlands	2,434,456	3,202,185	1.39	1.64	31.54
7	Spain	2,864,922	3,340,136	1.64	1.71	16.59
6	Israel	5,579,816	5,320,413	3.19	2.73	- 4.65
5	Egypt	5,202,865	5,776,963	2.97	2.96	11.03
4	Mexico	5,177,674	6,734,781	2.96	3.45	30.07
3	Germany	9,565,074	11,686,174	5.47	5.99	22.18

출처: GTA

2. 소비 트렌드

- □ 미국 농식품 소비량 파악 통한 소비성향
 - 미국인들은 너무 많은 스낵, 인스턴트 푸드 등 30년 전에 비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있음. 지난 30년간 미국의 음식 소비 패턴에 있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식품 가공 공정에서의 변화, 미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등임
 - 새로운 상품들, 특히 수입이 늘어나면서 먹기에 편리한 식품들이 선호되고, 외식이 늘어나면서, 광고의 영향으로 음식의 기준도 달라졌음.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이혼부부 가족,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식품소비 트렌드도 영향을 받게 되었음
 - 새로운 식사 가이드라인은 미국인들에게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정상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음식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즉 웰빙이나 유기농 식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음
 - 소비자들은 사실상 음식의 가격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가격이 오른

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대체품을 찾으려 할 것임. 미국인들은 개인 소비와 관련하여 아주 작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비용 중에서 음식에 대한 비중은 9.5%(2009년 기준)로 캐나다의 10%, 영국의 10%, 그리고 50%가 넘는 인도와 필리핀에 비하면 음식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 있음

< 미국 채소 소비량 >

(단위: 파운드)

78	1인당		남	성	여성	
구분	가정	외식	가정	외식	가정	외식
브로콜리	6.41	2.85	5.49	3.24	7.28	2.47
당근	7.81	3.28	7.15	4.04	8.43	4.51
샐러드	4.55	2.22	4.89	2.39	4.22	1.94
옥수수	22.60	7.94	24.61	8.71	20.71	7.23
오이	6.92	4.11	6.20	3.91	7.59	4.29
양상추	13.28	12.62	12.70	12.32	13.82	12.90
양파	12.40	7.56	14.30	8.87	10.61	6.30
완두콩	2.46	0.66	2.71	0.69	2.22	0.64
후추	8.20	6.17	9.01	7.09	7.44	5.26
감자	74.17	68.79	82.73	84.35	66.04	54.03
토마토	50.60	26.48	57.65	31.36	43.91	21.85
총계	209.40	143.68	227.44	167.08	192.27	121.42

출처: USDA ERS (2013.1.5)

- 미국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채소를 섭취하며, 미국인들의 주요 채소 소비는 감자, 토마토 옥수수 순으로 높음
-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채소의 가공상품은 주로 통조림, 냉동, 건조형태에 불과했으나, 기술혁신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현재는 각종 샐러드용 포장상품, 손질된 신선채소류, 간편조리용 채소류 등의 시간절약형 부가가치 상품들을 손쉽게찾아볼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식생활의 세계화에 따른 채소종자 개발과 외국 종자의 수용으로 품종 면과 색상 면에서 새롭고 다양한 채소류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체 채소 소비량 중 신선채소가 39%, 가공채소가 27%, 감자(신선 및 가공포함)가 30%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미국인들의 비만 및 식습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과일섭취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향후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늘어날 전망 임

Ⅲ 미국 통관 정보

1. 관세 현황

- □ 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건조 곤드레나물의 가장 근접한 HS CODE는 「0712.90.8580」로, 관세 율은 8.3%로 파악되었음

< 건조 곤드레나물의 관세율 >

HS CODE	품명	관세율	
0712.90.8580	기타 채소	8.3%	

출처: 관세청 (www.customs.go.kr)

2. 통관 거부사례

- 1) 잎&채소류(LEAF & STEM VEGETABLES)
- □ 개요

제품명	LEAF & STEM VEGETABLES, N.E.C
통관 거부일자	2014년 5월 12일
제품 코드	24THT99
관할 FDA	SEA-DO

□ 통관 거부 사유

① PESTICIDE2	402(a)(2)(B); 801(a)(3); ADULTERATIONSection 402(a)(2)(B)에 의해 위반되는 농약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Section 801(a)(3)에 따라 통관을 거부당함	
② USUAL NAME	403(i)(1), 801(a)(3); MISBRANDING	

□ 관련 법규 정보

1) 402(a)(2)(B); 801(a)(3); ADULTERATION

해당 품목이 Section 402(a)(2)(B)에 위배되는 살충제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품목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Section 801(a)(3)에 의거하여 통관이 거부되었음

- 본 조항은 미국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미 FDA가 만든 "수입 식품 사전 신고 최종 규칙(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Final Rule)"과 이 최종 규칙과 관련 한 정부 부처의 시행 정책을 정리한 CPG(Compliance Policy Guide)에 근거하며 CPG Section 575.100에 뿌리를 두고 있음
- 미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항으로 관계 조항인 CFR Section Section 801(a)(3), 402(a)(2)(B)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성분은 절대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 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성분임(Zero Tolerance)
- Endrin Vegetables 0.05, Cottonseed Vegetables 0.05
- Perthane Milk 0.2 (fat basis)
- Carbaryl Grains 0.2
- Tetradifon Milk 0.4 (fat basis)
- Diphenylamine Milk (see note "b")

2) 기타 채소 통관 거부 사례

- □ 뉴욕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 A씨는 19개 상자 분량의 식용 냉이에 대한 통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세관 직원으로부터 한 상자에서 흙과 함께 구더기가 발견되어 열아홉 상자 모두에 대하여 억류조치를 내린다는 통보를 받음
 - 식용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의 토양을 함께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포장이나 제품 유지방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이종 토양이나 씨앗이 미국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통관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관세사 A씨는 해당 세관을 방문하여 흙이 발견된 상자는 한 상자에 지나지 않고, 흙과 함께 발견된 구더기는 컨테이너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흙과 구더기가 발견된 한 상자만을 완전 폐기하고 나머지 18개 상자는 무사히 통관함

3. 수입 통관 절차

- □ 미국의 식품 수입정책
 - 미국은 2001. 9. 11 테러, 탄저균사건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분야도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public Law 107-188:The Bioterrorism Act)"을 2002. 6.12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바이오테러대응법은 5개 주제(Title)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테러의 3번 주제 (TitleⅢ)의 하부주제 A(Subtitle A(식품공급의 보호))의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 ② 식품수입의 사전신고
 - ③ 식품에 관한 기록의 정비 및 보존
 - ④ 행정적 억류조치
- □ 관세제도
- 관세법(Customs Act):미국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입시 준수사

항(Importation), 관세평가(Calculation of Duty), 감세 및 환불 (Abatement and Refund)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Customs Tariff):관세부과 및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규정
- 관세평가 방법: 미관세청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로 매년 당해연도의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표시하고 있음

□ 미국의 농산물 수입절차

- ① 수입회사가 입국신청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를 준비
- ②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수입 허가 결정을 요청함
- ③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 시 입국이 허가됨
- ④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짐
- ⑤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입국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입국이 거부됨
- ⑥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원산지 규정

-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미국 관세청 (U.S. Customs)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써 FDA 에서 관장하고 있는 라벨링 (Labeling) 규정과는 별도의 것임
- 따라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무역 세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원산지	0	정의
-------	---	----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 (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 원산지 표시법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반드시 표준영어로 표기법에 맞는 영어로 된 국가 이름이라야 함. 따라서 한국상품일 경우, 반드시 Korea를 사용하여야 함 (예: 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 표시방법 (표시방법은 3가지 규칙이 적용)

- 눈에 잘 뜨이는 곳에
- 읽기 쉽게
-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 □ 따라서 아주 작은 활자로 포장지 구석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규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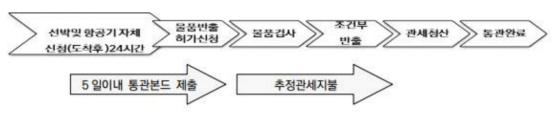
-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수입 허가증,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 를 보관해야 함
-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식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한국정부 권고서식
유효기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 통관절차 flow chart

< 통관절차 flow chart >



출처 : 글로벌윈도우

□ 미 관세법 기본 원칙

- 1994년 1월부터 발효된 세관근대화법으로 인해 관세행정의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의한 신속한 통관 등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음
- 관세청의 유권해석 결정제도에 의하여 수입품목에 사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 산지결정, 원산지표시, 특혜관세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문의함으로써 가능하면 유리한 관세율의 적용과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미국은 WCO(세계관세협력기구)가 채택한 국제상품분류제도 (HS Code)에 의거, 미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한 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를 운용. 8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9,121개에 달하는 세부 품목별로 관세율을 정해 둔 방대한 관세율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분류가 반드시일반통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 미국은 개도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

rences, GSP)를 운영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한 한국은 해당이 없음. 다만, 제3국에 투자 진출하여,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 해당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SP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

- 카리브해연안국가의 물품 및 미 도서속령(괌, 버진아일랜드 등) 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제공함
- 보세가공면세수입제도 (HTSUS 9802.00.60 및 9802.00.80)
 - 9802.00.60은 미국에서 제조한 금속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추가적 가공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의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
 - 9802.00.80은 미국내에서 제조한 부품이 조립을 목적으로 수출된 뒤 원래의 물리적 특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전체 가격 중 미국산 부품의 가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NAFTA(멕시코 및 캐나다), DR-CAFTA(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 이스라엘 및 기타 8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 특별무역법에 의한 특혜관세: CBERA(파나마 등 18개국), AGOA(사하라 사막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로서 남아공 등 38개국), ATPDEA(콜럼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CBTPA(Barbados 등 8개국)에 대한 특혜관세
- 특정한 적성국가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쿠바, 북한 2개국만 적용)
 - 이라크,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은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규제 대상국이나, OFAC의 허가를 받을 경우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 적용

□ 품목분류 제도

- 품목분류의 최종해석 권한이 미관세청에 있으며, 분류제도의 법적타당성 검토는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산하 법규담당부서(Executive Director, Regulations & Rulings), 개별품목의 분류결정은 뉴욕에 있는 전국수 입상품전문부서(NCSD,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조회는 신청자, 관련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제조자 ID Code, 수입예정항구, 수출국 및 상품수입국 등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며, 요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품목에 대한 완전한 설명, 수입물품이 미국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업적, 통상적인 기술적 사항, 화학분석이 필요한 경우 제조과장, 기타 판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도 아울러 제공

□ 수입 통관 기간 및 비용

수출 절차	기간(일)	비용(USD)
서류 준비	2	205
통관수속	1	90
항만 및 터미널 처리	1	420
내륙 운송 및 취급	1	600
합계	5	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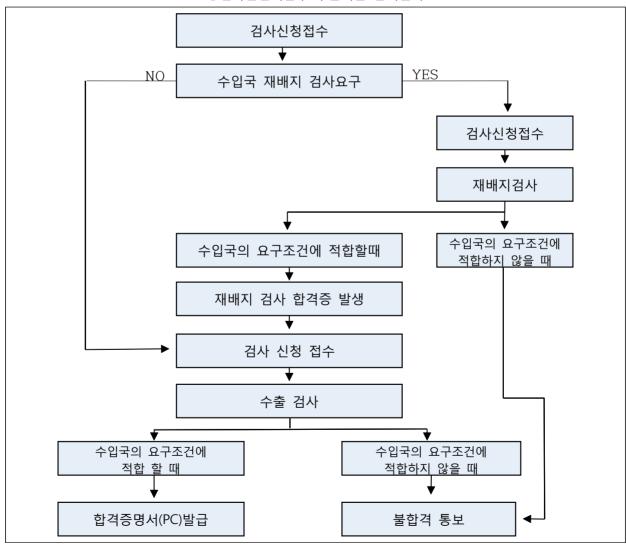
- 필요서류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Customs import declaration
Delivery Order
Packing list

Ⅲ 미국 검역 정보

- □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를 통한 수출식물 검역
 - 미국 수출시 건조 또는 가공된 채소류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 국내법상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식물 검역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함
 - 따라서 채소류 수출 시에는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를 통해 수출 대상국 수입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절차 >



출처: KATI (www.kati.net)

- □ 미국의 일반 검역제도
 - 검역절차
 - ① 수입허가증신청(수입상 →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
 - ② 수입허가(동식물 검역국 → 수입상)
 - ③ 도착통지서(수입상 → 부두/공항검역소[CBP])
 - ④ 도착통지서 전달/유통경로 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동식물 검역국)
 - ⑤ 검역절차사항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수입상)
 - ⑥ 검역(CBP농산물 서비스)
 - ⑦ 통관(CBP)

□ 검역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임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 □ 미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 미국 과실 및 채소류 수입에 관한 일반 요건
 -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 함
 - APHI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상업용, 비상업용 불문)
 - 예외: 건조, 가공(단, 냉동품, 일부 밤이나 도토리류는 수입허가 필요)

- 지정된 반입항을 통해 수입되어야 함
-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함
- APHIS는 일과시간 중 정규 근무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함
- APHIS는 동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채소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 과실 및 채소류에 대한 수입 허용
 - APHIS 청장은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과실 및 채소류의 수입을 허용
 - 지정된 관리방안
 - 도착지 검사
 - 병해충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PC에 원산지 기재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 혀지검역
 - 상업용 화물로만 수입
 -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기 허용되어 있던 품목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기존과 동일 한 조건으로 수입 가능
 - 기 허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PRA를 실시.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할 경우 그 결과를 연방관보에 게재, 결과에 반하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입허가서를 발행
 - 고시일 이후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충분치 않음이 확인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수입요건을 개정할 수 있음

□ 수입자 보안 신고

- 해상화물을 이용한 terror공격을 방지하기위한 안보조치로서 수입자는 화물 콘 테이너를 선박에 싣기 적어도 24시간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세관에 전송하여 야 함

□ 주요 FDA 위반 코드 및 사유

- FDA는 통관 거부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위반 코드를 부여하며, 한국산 식품에 서 주로 볼 수 있는 코드와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주요 FDA 위반 코드 중 No Process, Need FCE, Unsafe Col가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 한국 식품의 주요 FDA 위반 코드와 사유 >

위반 코드명	통관 거부 사유
False	제품 라벨이나 포장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정보가 눈에 띄게 표시 되어 있음
Filthy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제품에서 오물이 보이고 부패한 물질 또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 사용됨
Health C	해당 제품이 허가 받지 않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건강효과에 대한 있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음
Labeling	제품의 라벨 위치, 정보 제공 형식과 내용이 '공정 포장-라벨 법규'(FPLA: Fair Package and Labeling Act)를 위반함
Lacks Firm	제품 라벨에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 업체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Lacks N/C	제품 라벨에 내용물의 무게, 개수등 수량 파악이 가능한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List Ingre	여러 가지 성분(Ingredient)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라벨에 각 성분의 이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Needs FCE	21 CFR 108.25(c)(1) 또는 108.35(c)(1)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저산 통조림이나 산화음식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No English	영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No Process	21 CFR 108.25(c)(1) 또는 108.35(c)(1)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조 공정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저산 통조림이나 산화 음식 제조 업체에 해당)
Nutrit LBL	제품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영양소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Salmonella	인체에 해로운 살모넬라균을 함유하고 있음
Unsafe Col	안전하지 않은 색소 첨가제(color additive)를 함유하고 있음

출처 : FDA

- □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s' security filing requirement)
 - 해상화물을 이용한 terror공격을 방지하기위한 안보조치로서 수입자는 화물 콘 테이너를 선박에 싣기 적어도 24시간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세관에 전송하여 함
 - 판매자(Seller) / 구매자(Buyer)
 - 수입자 번호(Importer of record number)
 - 수탁자 번호(Consignee number)
 - 제조자(혹은 공급자, Manufacturer of supplier)
 - 수취자(Ship to party)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상품 분류 번호(Commodity HTSUS number)
 - 콘테이너 혼재지(Container stuffing location)
 - 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

Ⅳ 미국 라벨링 정보

□ 식품표시 제도

- FDA가 관할하며, 식품명, 내용물의 실중량, 원재료명, 영양분석표 등을 주 표시면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 (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
- □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이 있음
 - 원재료표시 :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영양분석표 : 영양분석표 면제 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 의 경우 구매시점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 권장

□ 기본표기사항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주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 하단 30%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자,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

□ 일반표기사항

- 라벨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nel;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nel;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정보표시면에는 주 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
- □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 표기
 - 식품명은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 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이어야 함
 - 식품이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 통 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 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식품명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함
 - 식품명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d)',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 태를 명시해야 함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 제품에는 '모방' (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 내용물의 실중량(Net Quantity of Contents) 표기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포장재나 용기 안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을 가리키는 라벨의 표시 사항임

- 내용물의 실중량은 별도 항목으로서 주 표시면의 밑부분 30%이내에서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으로 쓰여져야 함
-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s,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어야 함
-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통상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함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용기나 포장 안의 식품의 실중량만을 포함하며 용기나 포장지, 포장재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음. 실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운용기의 평균무게에서 빈포장용기, 뚜껑, 포장지의 평균무게를 뺄 것
- 일반적으로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 표기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한 것을 말함
-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주표 시면이나 정보표시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 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음
- 원재료명은 규정에 다른 용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
 - 예)과학용어인 'sucrose' 대신 'sugar'를 사용함
- 허가된 방부제(preservative)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 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하고 아래의 예처럼 방부제의 기능을 명시해야 함
 - 예) '방부의' (preservative), '부패지연' (to retard spoilage), '곰팡이방 지' (mold inhibitor), '향미보호' (to help protect flavor) '색상 유지증

진' (to promote color retention)

-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라고 표시할 수도 있음
- 파프리카(Paprica), 튜메린(Tumeric), 샤프론(Saffron)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라는 용어로 표시함
- 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이 면제되는 색소의 경우, 색소 규정이 승인한 색소들만 사용해야 함
 - 예) 공인된 색소(Certified colors): 'FD&C Red No. 40' 또는 'Red 40', 공인이 면제된 색소(Non Certified colors): 'caramel coloring' 또는 'beet juice'

□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19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해야 함
- 다음의 식품들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이며 *가 표시된 식품들로 영양정보가 제공 되거나 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함
 - *소규모로 조제된 식품
 -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
 - *제조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조제식품(요리한 고기, 훈제생선, 소시지, 과자, 사탕류)
 - *인스탄트 커피(plain, 무가당)나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한 영양소가 없는 식품
 - 조제분유와 4세 미만의 영아, 유아용 식품(이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정된 라벨규정이 있음)
 - 식사 보조용 식품(dietary supplements)

-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
- *생식품이나 해산물(자발적으로 겉면에 영양표시를 할 수 있음)
- 주문 가공생선(Custom-processed fish)이나 사냥육(game meat)
- 상자 단위의 계란(영양정보를 뚜껑 안쪽이나 상자 안에 삽입)
- "이 포장은 소매판매용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안에 여러 단위의 포장이 되어 있고 밖에 모든 필요한 표시문구가 있는 경우
- Self-service bulk foods : 영양표시는 겉면에 하거나 본래 용기에 잘 보이 도록 표시함
-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 '영양정보(Nutrition Facts)'의 표시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alternative panel)'에 표시할 수도 있음
- 포장이 세로로 공간이 부족해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로로 표 시할 수 있음
-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낱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개의 소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소포장 단위 식품)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 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제조자·포장업자·유통업자 표시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야 함
 - 거리주소 : 회사이름과 주소가 현행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경우
 -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 참고자료

- GTA: http://www.gtis.com/gta
- KATI: www.kati.net
- USDA ERS: http://www.ers.usda.gov/
- 미국 식약청(FDA) : www.fda.gov
- 미국 관세청 : www.customs.gov
- 미국 농무부(USDA) : www.usda.gov
-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 : www.aphis.usda.gov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 : www.fsis.usda.gov
-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관세청 : www.customs.go.kr
- 제약산업정보포털 : http://epharmakorea.or.kr
- 코트라 : www.kotra.or.kr